건축용 실링재

- 가.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.
- 나. 욕실 및 주방가구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 (건축용 실링재)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의 표1의 "SR", 표2의"1", 표3의 "9030"(SR-1-9030)인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을 사용한다. 다만, 내곰팡이성 확인을 위한 시험은 "별표1"의 시험방법에 따른다.
- 다. 세대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 (건축용 실링재)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의 표1의 "SR", 표2의 "1", 표3의 "9030"(SR-1-9030)인 실리콘계 비초산형을 사용한다.
- 라. "나"항 및 "다"항의 부위를 제외한 건물의 외부 등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 (건축용 실링재)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의 표1의 "PU", 표2의 "2", 표3의 "8020"(PU-2-8020)인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.
- 마.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창호(복도에 면한 창호는 제외)의 외측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KS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F형-25LM인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한다.(단, 내측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"라"항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("별표2" "실링재 적용 예시도" 참조))
- 바.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외부창호 미설치시에는 발코니창 내·외부에 "라"항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.
- 사. 세대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친환경시험 자재부문"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
분류	규격	적용부위
폴리우레탄계	PU-2-8020-A-N	방화문틀, 창호주위(내측), 조적조인트, PD함, 승강기 주위
실리콘계 비초산형	SR-1-9030(항균)	타일조인트, 욕조 주위, 세면기, 욕실문틀, 주방가구 상판
	F형 -25LM오염방지	창호주위(외측), 보일러 연도(외부), 에어컨 슬리브(외측)
	SR-1-9030-A-N	유리글레이징
	오염방지 검토	바닥타일 조인트 , 석재 조인트, 알루미늄 시트
실리콘계 알콜형		주차장 지붕 폴리카보네이트계
아크릴계	수성	석고보드 조인트 , 내부벽체, 도배, 도장 마감재 조인트